

2023년도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의 안내

「장학을 위한 급부금」은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외 활동비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금 (일정액)을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취학지원금」, 「급부형장학금」과는 제출기한·인정기준 등이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대상 확인 시트 (연액 급부)

2023년 7월 1일 현재, 보호자등(※주 1)은 도쿄도에 살고 있습니까?

네

아뇨

거주하고 계신 도부현(道府県)에 문의하십시오. 각 도·부·현에 따라 제출 기한이나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서둘러 거주지 도·부·현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일 현재, 보호자등이 생활보호 (생업부조) 를 수급 받고 있습니까?

아뇨

2023년도 보호자등 전원의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이 비과세 (0 엔)입니까?(가계의 급변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
 ※ 과세일 (2023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해외 주재 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 과세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과세금액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아뇨

대상이 아닙니다.
 ※ 가계의 급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8.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2023년 7월 1일 현재, 학생 본인이 통신제 과정 또는 전공과에 재적하고 있습니까?

아뇨

학생본인은 2023년 7월 1일 현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A: 고교생이 아닌 15세 (중학생 제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고 있는 형제 자매
 B: 고교생인 형제 자매 (공립·사립, 연령 등은 관계 없음)

네(B)

그 형제 자매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됩니까?
 · 학생 본인보다 연장자인 고등학생이다.
 · 통신제 과정에 재학중인 고교생이다.

네

아뇨

아뇨

「생활보호 (생업부조) 수급세대」의 급부액수입니다. (주 2)

「비과세세대 (통신제·전공과)」의 급부액수입니다. (주 2)

「비과세 세대 (제 2 자녀 이후) ·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입니다. (주 2)

「비과세 세대 (제 1 자녀) ·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입니다. (주 2)

(주 1) 보호자등이란 원칙적으로 학생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학생의 주된 생계 유지자가 됩니다.
 (주 2) 보호자등의 부양 상황에 따라 급부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 급부액 (연 금액)

	전일제/시간제	통신제	전공과
생활보호 (생업부조) 수급세대	32,300 엔	32,300 엔	50,500 엔
비과세 세대 (제 1 자녀)	117,100 엔	50,500 엔	
비과세 세대 (제 2 자녀 이후)	143,700 엔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예정 시기는 2023년 12월 이후입니다.

3. 대상자의 상세 요건

2023년 7월 1일 (기준일※7월 이후 입학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다음 각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호자등

(1) **고등학교등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는 국공립 고교생등이 있을 것.**

※ 고교생이 아동보호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되어 조치비(전학 여행비 또는 특별 육성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제 자매 등 이 제도의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자등이 도쿄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보호자 등의 주소가 도쿄도가 아닌 경우 거주지의 도부현(道府県)으로 신청하십시오.

※ 학생 본인이 도쿄도에 있지 않은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어도 보호자등의 주소가 도쿄도인 경우 도쿄 교육위원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생활보호 수급 세대, 또는 보호자등 전원의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의 합산이 비과세(0엔)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또는 보호자등의 실직, 도산 등의 가계 급변의 사유로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의 합산이 비과세(0엔) 상당이 될 전망이다 것.**

※ 어떤 이유로 인해 과세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거나 마이넘버에 의한 과세금액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해 등에 기인하지 않는 이직(정년퇴직등)은 가계 급변의 대상이 아닙니다.

※ 7월 이후 가계가 급변한 경우, [8.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세대 연수입 예상

세대의 인원수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세대 연수입 예상	204.4 만엔 미만	221.6 만엔 미만	271.6 만엔 미만	321.6 만엔 미만	370.4 만엔 미만	413.7 만엔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35 만엔 이하	147 만엔 이하	182 만엔 이하	217 만엔 이하	252 만엔 이하	287 만엔 이하

※ 세대의 인원수는 신청자(보호자등)와 그 부양 친족의 수를 합한 인원수입니다.

※ 이 표의 세대 연수입은 회사원으로 급여수입만 있는 경우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 2인 가구의 세대 연수입 예상액 및 연간 소득금액은 한부모가구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4. 자주 있는 질문

Q1 소득할액이 비과세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1 근무중인 회사 등에서 발행되는 「특별 징수세액 통지서」나 거주지의 구청 및 관할 관청등에서 송부된 「주민세 납세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류가 없는 분은 2023년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이나 관할 관청 사무소에서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를 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해외에 부임 중이라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취학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금을 위한 급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A2 장학금을 위한 급부금은 보호자 전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외에 부임중 등의 이유로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의 주소라도 국내에 없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1일 현재, 한 쪽 보호자등이 도내에 주소가 있고, 보호자등 전원의 2023년도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이 비과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Q3 확정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A3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세가 비과세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마이 넘버에 의한 세액의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확정신고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3년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생업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업부조 수급 증명서」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아버지가 단신 부임으로 다른 현에 살고 계십니다. 신청은 도쿄도에 해도 괜찮습니까?

A4 도쿄도가 생활의 본거지인 경우는 도쿄도에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단신 부임의 지역에서 이미 신청하신 경우는 도쿄도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5 7월 1일 이후, 전학(자퇴) 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전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까?

A5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는 자퇴전의 학교, 7월 1일 이후에 전학한 경우는 전학 가기 전의 학교에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가계 급변」 발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6 이직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해고 통고서, 파산 선고 통지서, 폐업 등의 신고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휴업 안내나 근무일이 줄어 든 근무표 등 「가계 급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필요서류

※ ☆표시가 되어있는 서류는 재학중인 도립학교의 경영기획실 또는 도쿄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 7월이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전원

- ①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신청서 (☆)
- ② 지불금 계좌이체 의뢰서 (☆) + 통장사본
(금융기관 코드·지점 코드·계좌번호·계좌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③ 충당위임장 (☆) (도립 고교등에서 고교생에 관한 학교 징수금의 충당을 허락한 경우)

● 생활보호(생업 부조)수급 세대의 경우

- ④ 생업부조 수급 증명서 (☆)
 - 「생업부조 수급」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 복지사무소가 발행한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 보호자와 관련 「수급 개시일」이 「2023년 7월 1일」 이전, 증명서의 발행일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 취학 지원금의 신청을 위해 마이 넘버 수집 대지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비과세 세대 (제1자녀 및 제2자녀), 가계 급변 가구

	비과세 세대 (제1자녀 및 제2자녀)	가계 급변 가구
④	[도립학교의 학생] 마이넘버 수집대지 (도립학교 경영 기획실에서만 배포) ※ 취학지원금 신청을 위해 마이넘버 수집 대지를 이미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 공제 등으로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계 급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직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가계 급변 이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대한 보호자 전원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도 주민세 과세증명서 2023년도 특별징수 세액통지서 2023년도 주민세 납세통지서
⑤	[도립학교 이외의 학생] 다음 중 하나에 대한 보호자 전원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증명서 2023년도 특별징수 세액 통지서 2023년도 주민세 납세 통지서 	가계 급변 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작성한 예상급여, 최근 급여명세(3개월) 등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증명서류 등
		부양친족의 연령·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친족이 기재된 주민세 과세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⑥	주민표의 복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 보호자가 「주민이 된 날」이 「2023년 7월 1일」 이전, 증명서 발행일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되어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생이 아닌,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⑦	학생본인 및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이 국민건강 보험인 경우 부양신청서 (☆) 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⑧	형제 자매가 다니는 고교의 재학 증명서 (도립 이외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형제 자매가 있어서 제2자녀로 신청을 하는 경우)	
⑨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학생 본인의 보호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 건강보험증이 국민건강 보험인 경우 부양신청서 (☆) 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 급변 가구의 필요 서류는 도립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도립 학교 이외의 학생 모두 공통입니다.

■ 제출된 (특정)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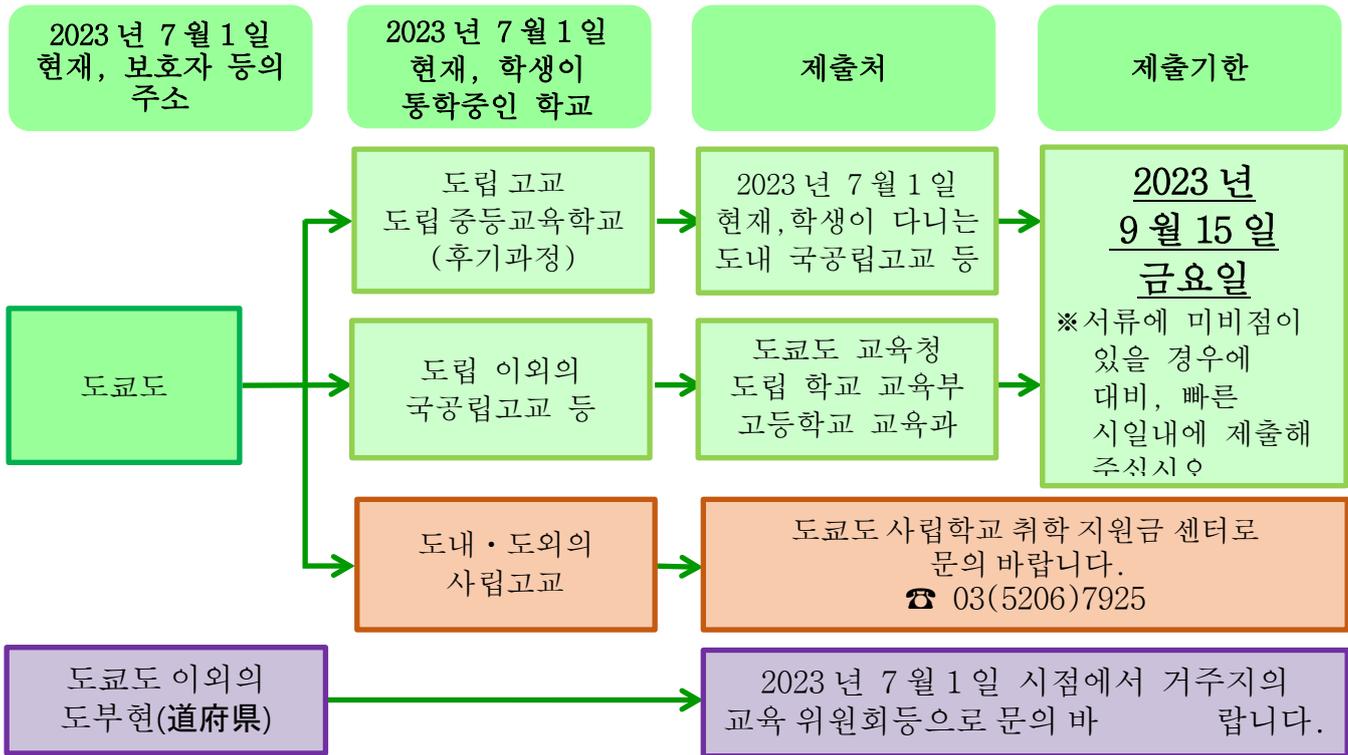
이 제도를 위해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수집하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특정)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장학을 위한 급부금에 관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업체에 대해 필요하며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출해 주신 마이넘버는 다른 취학 지원사업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도쿄도립학교등 급부형 장학금, 도쿄도립학교등 재학습 지원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6. 서류제출시의 주의사항

- (1) 마이넘버 수집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의 마이넘버가 주민표에 기재된 경우,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검은 칠 등)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형제 자매 등의 건강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증에 기재되어있는 보험 번호와 피보험자 등의 기호·번호 등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검은 칠 등) 한 후 제출하십시오.**
- (3)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마이넘버 등의 글자가 선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해 주십시오.**
- (4)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 후견인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의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므로 수속 절차상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 ② 아동복지 시설의 장, ③ 법인인 미성년자 후견인
 - ④ 재산에 관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 후견인
- (5) 학생이 도립 이외의 학교에 다니거나 사정으로 인해 마이넘버 수집대지를 제출하실 수 없는 분은 「마이넘버 수집대지」 대신에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23년도 주민세 (비) 과세증명, ② 2023년도 특별징수 세액 통지서,
 - ③ 2023년도 주민세 납세 통지서 (*급여 소득만 있으신 분)
- (6) 도립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금 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재학중이라는 증명 및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 전공과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도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기한 · 제출처 등

보호자의 주소 및 학생 본인이 통학하는 학교에 따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 가계 급변 세대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말까지)



8. 문의처

- ▶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또는 도립 중등 교육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세대
 학생 본인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의 경영기획실
- ▶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세대
 〒163-8001
 도쿄도 신주쿠 구 니시 신주쿠 2초메 8번 1호
 도쿄 도청 제2 본청사 북쪽 15층
 도쿄도 교육청 도립학교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 경리 담당 ☎ 03(5206)7862 (평일 9:00-17:45)